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원격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각 지역에 본 교육원의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는 본 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정원) 본 교육원의 강좌별 정원 및 교육과정은 원격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수업) 본 교육원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1. 온라인교양교육
2. 온라인학점은행제 운영
3. 그 밖에 본 교육원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교육

제7조(교육장소)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8조(원장) ① 본 교육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본 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 각계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행정실) 본 교육원의 행정실은 예원예술대학교 직제에 의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원격평생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수강인원 및 학습비(수강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수강등록 및 납부금

제14조(등록 및 입학) 본 교육원의 수강등록과 입학 시기는 매학기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강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등록) 본 교육원에 수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원사이버 교육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종학력 증빙자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발절차) 본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신청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3일 이전에 마감한다.

제18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수강생은 매과정 등록시에 온라인 납부 또는 전자결제를 통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학칙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수료

제19조(수업연한)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매과정별로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정한다.

제21조(이수교과목) 각 과정별 이수교과목은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자격증) 수여) ① 각 강좌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② 과정개설 공인기관 및 민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③ 본 교육원에서 직접 개발·개설한 자격과정에 한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총장명의로 자격인증서(자격증) [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23조(수료증명서 발급) 각 강좌별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

제24조(수강생 지도) 본 교육원의 수강생은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원장은 교육원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특전) 교육원생에게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열람
2. 취업지원실 이용
3. 원우회, 동아리 결성 및 활동지원

제28조(장학금) ① 본 교육원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한 자 및 본 교육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신청일로부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장학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이 많은 쪽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한다.

제7장 공개강좌

제29조(공개강좌) ① 본 교육원에 각 강좌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매과정별로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장 재정

제30조(회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별도 재정으로 관리한다.

제31조(예산승인) 원장은 본 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자의 학습료
2. 개인이나 단체의 보조금
3. 위탁교육 지원금(위탁교육시)
4. 기타 수입

제33조(결산보고) 원장은 사업 수행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5조(운영내규)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12. 6. 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명 :

생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OOOO과정의 강좌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명서]

제 호

수료증명서

성명 :

주민번호 :

과정 :

수학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자격인증서]

제 호

자 격 인 증 서

성명 :

생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예원예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규정
제22조에 의한 OOOOOO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학위명 성명)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학위명 성명)